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29호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제50조 등에 따라 「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」 대상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

「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」 공모 공고

1. 공모개요

- 공 모 명 :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
 - 공모분야 :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·방재분야
 - 지원내용 : 공모분야 기술·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 및 실증사업비 등 지원
 - 지원규모 : 3건 내외 사업에 대해 실증 사업비(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) 및 책임보험료(연간 최대 90% 1,500만원 이내) 지원
- *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하고 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며, 실증사업비 지원 건수 및 규모는 변동 가능

2. 신청자격

-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를 보유한 기업·비영리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·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(지자체 포함 가능)

* 세부적인 사항은 【별첨】 공모 안내서 참조

3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4년 2월 28일(수) ~ 3월 6일(수) 17:00까지
- 신청방법 :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(<https://smartcity.kaia.re.kr/sandbox>)

4.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: 공모 안내서(별첨) 참고

5. 유의사항

-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시 전 신청 건만 유효하며, 이후 신청 건은 대상에서 제외함
 -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취소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 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(044-201-4842, 3738) 또는 위탁기관*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*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희석 수석연구원(031-389-6522, dilution@kaia.re.kr)

【별첨】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안내서

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

공모 안내서

2024. 2.

국 토 교 통 부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사업 개요 | 1 |
| II. 공모 계획 | 4 |
| III. 공모 평가방법 및 기준(안)..... | 7 |
| IV. 사업 관리 | 8 |
| V. 유의 사항 | 13 |
| 참고. 추진절차 및 시기(예정) | 15 |
| 첨부.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| 1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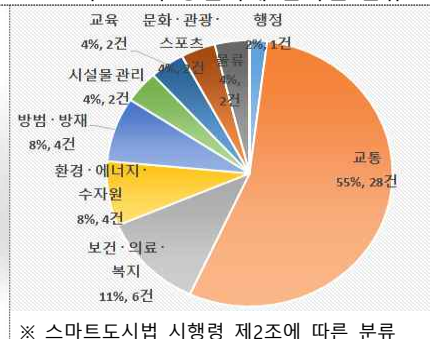
□ 추진 배경

- 도시운영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**혁신기술을 도입** 하고 있으나 **촉촉한 규제**의 제약으로 인해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
 -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 다수 부처의 **복합적인 규제**를 해소할 수 있는 **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** 제도를 도입·운영 중('20.2~)
- 제도 시행 4년여 동안 다양한 스마트도시 신기술 **발굴·실증을 지원*** 하였으나, **특정분야에 집중**되어 다양한 분야의 규제 발굴 필요
 - * 규제신속확인 48건, 규제샌드박스 51건 승인을 통해 202억원 투자유치 등 성과
 - 그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주로 **교통 분야(55%)**에서 발굴·실증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며, **전부처 승인과제의 73.2%는 유사·동일과제**

<규제샌드박스별 승인건수 비교>



<스마트도시 승인과제 분야별 분류>



- 스마트도시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가 융·복합되는 **혁신기술·서비스 생태계**를 촉진하기 위해 **분야 확대 필요성** 증대
 - 규제특례가 활성화된 교통(DRT, 전기차충전 등) 분야 외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·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필요

스마트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기술의 안정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, 활성화가 필요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지정 공모 추진

□ 추진 방향

- (방향) 규제샌드박스 수요가 있으나 특례신청이 저조한 기술분야를 발굴하여, **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실증사업(규제샌드박스)**을 공모하고자 함
 -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정 분야를 지정하고 동시에 규제특례를 추진함으로써 부처협의 등의 **소요기간 단축** 및 **효율성 증대**
 - 지정된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해소가 필요한 규제를 일괄 발굴 및 공유함으로써 **규제 해소 필요성**에 대한 **담론을 형성**하여 추진

<서비스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적용 예>

|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 | 주요 솔루션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행정 | 스마트 민원서비스 |
| 교통 | 수요응답형 버스 |
| | AI 스마트신호등 |
| 보건·의료·복지 | 원격의료 |
| | 맞춤형 헬스케어 |
| 환경·에너지·수자원 | 에너지 거래·공유 |
| | 환경 리워드 서비스 (탄소배출권, 스마트 재활용 등) |
| 시설물 관리 | 가스시설·교량 안전관리 |
| | 지능형 영상분석 |
| 교육 | 맞춤형 비대면 교육 서비스 |
| 문화·관광·스포츠 | 상권·유동인구 분석 |
| 물류 | 로봇 물류배송 |

□ 공모대상 분야

- (공모분야) '24년 공모는 “방법·방재”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
- (필요성) 현재 지자체 스마트도시 계획에서의 방법·방재 서비스 대부분은 취합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기단계임
 - '17년부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도시안전망 5대 연계서비스를 구축·보급하고 있으나, AI·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육성 필요
 - 사전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황발생 시 관리주체의 빠른 대응 뿐만 아니라, 당사자·주변인의 신속·정확한 대응 지원서비스 발굴 필요
 -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, 자가망 연계, 보안적합성 심사 등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서 규제특례를 통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
- 규제목록 예시

| 활용기술 | 서비스 유형 | 규제사항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영상처리장치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7조, 제18조 |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, 제공 및 목적외 이용 제한 |
| 음성처리장치 |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|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 금지 |
| 자율주행 로봇 |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| 공원 내 30kg, 시속 25km/h 이상 동력장치 출입 금지 |
| 비법정 표지판 | 안전표지의 종류, 만드는 방식 및 설치·관리기준 | 비법정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 제한 |
|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|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| 재난관리의 목적 외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제한 |
| 위치정보 |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|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·이용 또는 제공 제한 |
| 화재 속보설비 |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| 화재 속보설비 통신방식 제한 |
| 드론 | 항공안전법 제129조 |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개인정보수집 제한 |
| |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, 제310조 |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기준 및 조종자 행위 제한 |

II

2024년 공모 계획

□ 공모 개요

- (공모명)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
- (공모기간) 2024. 2. 6.(화) ~ 3. 6.(수), 30일간
- (접수기간) 2024. 2. 28.(수) ~ 3. 6.(수) 17:00까지
 - *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(<https://smartcity.kaia.re.kr/sandbox>)
- (공모분야)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·방재분야
- (공모대상)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*를 보유한 기업·비영리 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·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(지자체 포함 가능)
 - *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·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·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
 - 접수 이후에도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추가·변경 가능
 - * 단, 별도 공지하는 실증사업계획서 제출기한까지로 한정
- (공모요건) 신청기관(또는 컨소시엄)이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하여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 심의 소과정 지원* 및 실증사업비 등 예산 지원
 - * 법률컨설팅, 부처협의를 포함한 원스톱사전컨설팅 등 지원
- (지원규모) 3건 내외에 대해 실증사업비(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) 및 책임보험료(연간 최대 90% 1,500만원 이내) 지원
 - * 실증사업비 지원 여부는 규제특례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, 실증사업비 지원 시 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규모 결정
 - 실증사업비 지원 시 사업자가 영리기업인 경우 기업 유형에 따라 일정비율*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필요
 - * (중소기업)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25% 이상, (중견기업)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40% 이상, (대기업) 해당 기업 총 사업비의 50% 이상

< 실증사업비 지원제외 대상 >
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
-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기업
- 부채비율이 1,000%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
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
-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
※ 사업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 시 지원가능
-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실증사업비 미지원 대상으로 심의된 경우
- 국토부 타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
- 동일 신청기관이 동일 기술·서비스로 타 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
- 해당사업의 규제내용 관련 법령이 제·개정 되었거나 개정되어 공포 예정인 경우

- (실증기간) 4년 이내(1회 2년 이내 연장 가능)
- (사업비 지원기간) 1년 이내(실증기간과 상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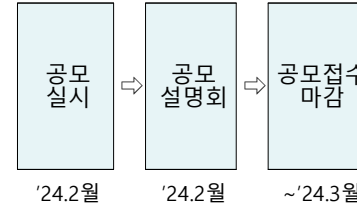
□ 추진 절차

- 접수단계에서 제출한 **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**로 규제신속확인 추진 후 **‘규제 있음’을 확인한 사업**에 대해 **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**(실증 지역 지자체 지원확약서 포함) **작성**
* ‘규제 있음’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규제신속확인 없이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작성
** 신청기관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작성 시 현황 증빙자료(신용등급평가서,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) 제출(제출기한 별도 공지)
- **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**에 대한 **전문가 평가***를 통해 **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**
* 기술 우수성·혁신성,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, 계획 구체성 등을 평가
** 접수 건수가 3건 이내인 경우, 전문가 평가 생략

-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**심의 결과** 및 **지원 사업비 적정성 검토** 등을 통해 **사업비 지원 여부 최종 결정**

* 실증대상지 미확보, 사업계획서 작성 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, 수시접수 건으로 전환하여 지원 가능

< 추진절차 및 일정(안) >



*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

□ 평가 방법

- (평가주체)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)은 접수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평가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**평가위원회***에서 실시
 - *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 및 방법·방재 분야 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(비공개)
- (사전검토) 진흥원 사업담당자가 신청 서류의 **적합성 여부** 및 공모안내서와의 **부합 여부** 등을 사전에 검토
- (평가방법) 평가위원회에서 접수 사업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고, 고득점 순위에 따라 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
 - * 단, 접수 건수가 3건 이내인 경우, 평가위원회의 평가 생략
- (평가점수 산정)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**중위평균점수**를 최종평가점수로 확정
 - *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

□ 평가 기준(안)

| 평가항목 | 배점 | 세부 평가항목 |
|---------------|-----|--|
|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| 20 | · 적용 기술 및 서비스의 우수성, 혁신성 및 차별성 |
| 신속 착수 가능성 | 25 | · 보유 기술 및 서비스 준비 수준 · 인력, 예산 등 필요자원 준비 수준 |
| 사업추진 필요성 | 20 | ·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, 선정의 당위성 ·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특례 적용 필요성 |
| 계획의 구체성 | 20 | · 보유 기술 및 서비스 적용 계획의 구체성 · 실증 시나리오, 시물레이션, 데이터 관리 및 활용계획 · 지자체 협의 및 시민 참여 방안의 구체성 · 국민의 건강·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적정성 및 타당성 |
| 사업화 및 파급효과 | 15 | · 사업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· 국내외 확산 방안(상품화·비즈니스 모델 등) · 실증사업 추진 시 사회적,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|
| 합계 | 100 | |

□ 계약 체결

- 실증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, 신청기관은 진흥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
 - 계약보증금 납부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로 대체 가능
- 계약에 따른 선금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

□ 책임보험 가입

- 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·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개시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 -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
 - ①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
 - ②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
 - ③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
 - ④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
- 실증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전 진흥원에 책임보험가입(안)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가입하여야 함
- 대기업을 제외한 실증사업자는 책임보험료의 90%(연간 최대 1,500만원 이내)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
 - * 규제특례 사업을 위해 가입한 보험에 한해 지원(타부처 규제샌드박스 보험 등 중복지원 불가)
- 실증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후 가입 증빙자료를 실증지역 관할 지자체에 제출 필요

□ 진도 관리 및 보고

- 정기 보고의 시기와 방법(예 : 격주)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 선정 이후 착수보고 시 협의하여 결정
- 실증사업자에 대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실태는 계약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확인 및 점검 예정
 - 사업책임자, 참여인력 등 실무자 면담과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위한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현황 점검을 위한 진흥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

□ 계획 변경

-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, 경미한 사항의 경우 진흥원 사업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추진
- 중요사항 변경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
 - * 사업 목표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사업비 비목, 사업비 관리계좌 등 선정 당시의 조건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 사항

□ 실증기간 연장 신청

- 실증기간(특례기간)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한 연장 신청서 제출 필요
 - 해당 사업의 승인 확인서 사본
 - 해당 사업의 연장 사유서
 -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
 -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
 - 그 밖의 실증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

□ 법령정비 요청

- 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음

□ 실증사업 결과 보고

- 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국토교통부, 규제부처,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함
 -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 제출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와 이의 입증자료 제출 필요
 - ①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
 - ②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
 - ③ 주민 등의 손해발생, 손해배상 여부 및 조치 결과
 - ④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에 대한 시험·검증 결과

□ 사업비 사용 및 정산

- 사업비는 사업계약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며 계약시 안내 될 비목별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에 따라 별도의 사업비 계정으로 회계처리
- 사업수행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, 회계법인과 정산 일정, 방법 등을 협의
- 사업수행자는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법인에 제출하며 정산 관련 증빙은 계약종료 후 5년간 보관
-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불인정 금액, 반납 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사업자에게 송부
- 사업수행자는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를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진흥원에 제출
 -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바인딩하여 1부 제출

- 진흥원이 정산결과를 검토한 결과,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게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실시
- 사업수행자는 회계감사 후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, 최종 반납금을 진흥원에 송금하여야 함
- * 반납대상 : 총사업비 집행잔액, 지원금 발생이자, 회계감사 결과 사업비 불인정 금액 등

□ 제재 조치

- 사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약되거나, 사업수행에 대한 검수 결과 ‘미흡’으로 판정된 경우,
 - 지원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향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
-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실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□ 성과물 소유권 및 기타 사항

-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(실증사업결과보고서)은 사업종료시 진흥원에 제출하되, 기타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와 진흥원,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
 - 다만, 사업 참여기간 중 사업수행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
- 사업수행자는 사업성과의 공유, 홍보 등을 위해 주무부처와 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발표, 부스 운영 참여 등 협조해야 함
 - 계약 종료 후에도 향후 1년간은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반드시 본 사업의 지원 사실을 알려야 함
-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·제도

※ 기타 사업 관리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계약체결 시 안내 예정

□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

- 신청서 및 설명서에 대상 기술·서비스, 관련 규제사항, 관련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비 미지원
 - * 규제신속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규제 관련 법령 등이 이미 제·개정되었거나 개정되어 공표 예정인 경우 및 규제신속확인 결과 규제없음으로 나올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으나, 목표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술적 성능, 사양 등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배정 가능

□ 기타 유의 사항

-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신청 기관 관계자(대표자 포함)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진흥원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
- 이 사업의 우선순위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 위원 정보, 신청서별 평가 내용,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
-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름

□ 접수 및 문의

- (접수방법)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 - ☞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(<https://smartcity.kaia.re.kr/sandbox>)
- (문의)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윤희석 수석연구원(031-389-6522)

참고

추진 절차 및 시기(예정)

| 추진절차 | 추진시기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 공고 | '24. 2. | •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시행 | 국토부 |
| ↓ | | | |
| 사업설명회 | '24. 2. | • 공모사업 설명 | 국토부, 진흥원 |
| ↓ | | | |
| 신청서류 접수 | ~'24. 3. | • 신청서류 접수 - 신청공문, 규제신속확인 신청서, 사업설명서 등 *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은 첨부 참조 | 신청기관→진흥원 →국토부 |
| ↓ | | | |
| 규제 신속확인 | ~'24. 4. | • 규제 여부 확인 - 규제 소관부처 30일 이내 회신 | 국토부→규제부처 |
| ↓ | | | |
|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| ~'24. 5. | •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- 규제특례 심의용 사업설명서 작성 (심의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) | 신청기관 (진흥원 지원) |
| ↓ | | | |
| 지자체 협의 | ~'24. 5. | • 지자체에 실증사업계획서 검토요청 - 지자체 의견의 실증사업계획서 반영 및 지자체 지원확약서 확보 | 신청기관 (진흥원 지원) |
| ↓ | | | |
| 우선순위 평가 | ~'24. 5. | • 전문가 평가 - 혁신성,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,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| 평가위원회 |
| ↓ | | | |
| 규제 특례 신청 | '24. 5. | • 신청서류 접수 - 스마트실증사업 사업계획서, 지자체 지원확약서, 참여기관별 예산(안) 등 | 신청기관→진흥원 →국토부 |
| ↓ | | | |
| 규제부처 협의 | ~'24. 6. | • 법률소관부처 검토·협의 - 규제특례 허용여부, 규제특례 조건, 안전성 검증 계획 등 협의 * 신청기관의 발표 및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| 국토부 (신청기관, 진흥원) ↔규제부처 |
| ↓ | | | |
| 규제특례 전문위 심의 | ~'24. 6. | • 규제특례 안건 사전검토 * 유사·동일 사업인 경우 심의 생략 | 국토부, 진흥원 |
| ↓ | | | |
| 규제특례 심의 | '24. 7. | •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개최 * 실증사업비 지원 여부 결정 | 국토부, 진흥원 |
| ↓ | | | |
| 계약 체결 | '24. 7. | • 사업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* 사업비 적정성 검토 후 계약 체결 | 진흥원↔선정기관 |
| ↓ | | | |
| 사업개시 준비 | '24. 7.~ | • 책임보험 가입, 사업개시 이전 부가 조건 이행 완료, 이용자 고지 등 | 선정기관 |

* 추진일정은 심의 등 행정 처리기간 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

첨부

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

□ 제출서류 목록

| 번호 | 제출 서류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2024 분야공모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신청 공문 |
| 2 |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원본(대표자 직인 날인) 1부 |
| 3 | 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 1부 |
| 4 |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|

※ 주 :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되, 사업설명서는 한글파일로 제출

[서식 1 :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양식]

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2서식]

규제신속확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
| 접수번호 | | 접수일 | |
| 신청인 | 법인명(성명) |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<small>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</small> | |
| | 주소 | | |
| | 대표자명 | 전화번호 | 전자우편 |
| 사업 개요 | 명칭 | | |
| | 주요 내용 | | |
| 소관 부처 및 기관 (선택적 기재) |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| | |
| | 관련 허가·승인·인증·검증·인가·등록 등 | | |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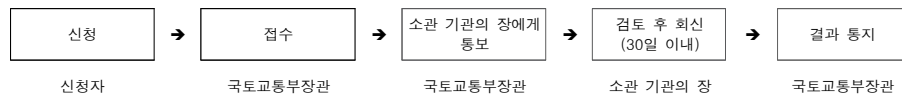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 서류 | 해당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처리 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서식 2 : 규제신속확인 사업설명서 양식]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규제 신속확인 설명서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1장 신속확인사업 내용 | 0 |
| 1.1 사업 개요 | 0 |
| 1.2 사업 내용 | 0 |
| 제2장 신속확인 이슈 사항 | 0 |
| 2.1 법·제도 이슈 사항 | 0 |
| 2.2 기타 질의 사항 | 0 |

제1장 신속확인사업 내용

1.1 사업 개요

[작성방법]

1.1 신속확인사업 개요 ※ 어떤 서비스(what)를 누구(to whom)에게 어떻게(how) 제공하는지 설명

- 신속확인을 신청하는 기술·서비스 전체에 대한 개요 설명
- 기술·서비스의 개략적인 개념 설명 작성
- 기술·서비스 구축방안 또는 제공방안 작성
- 기술·서비스 제공자, 이용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역할을 포함하여 설명 포함
-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[서비스 개념도] 필수 첨부

[작성예시]

VR 러닝머신 테마파크 설치

- 유원시설업종인 테마파크에 VR(Virtual Reality) 기기를 설치하여, 러닝머신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사업
- 유행의 집에서 찾아오는 괴물을 VR 러닝머신에서 뛰는 동작을 통해 피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
- VR 러닝머신 활용 미니 축구게임을 만들어 이용객을 모아 가상현실 축구장 구현

-
-
-
- *

서비스 개념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
서비스 개념도(이미지, 다이어그램) 필수 첨부

[서비스 개념도]

1.2 사업 내용

[작성방법]

1.2 사업 내용 (자유분량) * 신속확인 사업의 목적, 범위, 대상, 기간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

- 사업내용
 - 신속확인을 받아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·서비스 내용 작성
 -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, 네트워크 등 구축방안 작성
- 사업지역
 - 사업추진 및 서비스 제공 지역범위 작성
 - [사업지역 범위]에 지도자료로 사업지역 범위 표시
- 사업대상
 -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작성
 - 서비스 제공자, 이용자 등 역할을 구분하여 작성
- 기타 설명사항
 -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 등 첨부

사업내용

○

사업지역

○

[사업지역 범위]

사업대상

○

기타 설명사항

○

제2장 신속확인 이슈 사항

2.1 법·제도 이슈 사항

[작성방법]

2.1 신속확인 신청내용 (자유분량)

- 신속확인을 받을 규제에 대한 구체적 신청내용
 - 확인하고자 하는 규제사항의 법적 논점을 법령별로 작성

[작성예시]

VR 리닝머신 유원시설업 진출

○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~~~~~

○ 당해 조항에서 정하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

○

-

*

2.2 기타 질의 사항

[작성방법]

2.2 기타 질의 사항

- 명확한 규제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, 법령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규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술
 - 명확한 규제 관련 법령 등을 모를 경우,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
 - 법령상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규제 사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서술

○